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가단3448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
판 결 선 고 2022. 7. 21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75,307,370원 및 그 중 7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1. 3.부터 2022. 7. 21.까지는 연 10.94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. 10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0. 23. 접수 제29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

- 1)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. 10. 13. 70,000,000원을 이자는 변동이율, 변제기는 2021. 4. 15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피고 B는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이에 따라 2021. 11. 2. 현재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75,307,370원이며, 그 중 대출원금은 70,000,000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0.94%이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피고 B 소유였는데, 피고 B는 2020. 10. 22. 처인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20. 10. 23.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36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다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75,307,370원 및 그 중 원금

70,000,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1. 11. 3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7. 21.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.94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B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우경아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금정구 [] 아파트 [] 동
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금정구 []

철근콘크리트조 스타브지붕 25층 아파트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[]

구 조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84.93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부산광역시 금정구 [] 대 30203.1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30203.1분의 26.7602

- 이 상 -

